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(우재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806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1.

발 의 자: 우재준 • 이성권 • 임종득

김선교 · 김위상 · 이종배

강대식 • 이상휘 • 구자근

정동만 • 박정하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유치원, 초등학교, 어린이집 등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,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· 새벽, 토요일·일요일, 공휴일·대체공휴일 및 방학 기간에도 일률적 으로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어 불필요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 필 요성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어린이의 통행량과 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평일 야간·새 벽, 토요일·일요일, 공휴일·대체공휴일 및 방학기간에는 어린이 보 호구역에서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 영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1항 단서 신설 등). 법률 제 호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기준 등"을 "기준 등과 제1항 단서에 따른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"으로 한다.

다만, 어린이의 통행량과 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평일 야간·새벽, 토요일·일요일, 「공휴일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휴일·대체 공휴일 및 방학 기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등과 노면전 차의 통행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	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
·해제 및 관리) ① 시장등은	·해제 및 관리) ①
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	
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	
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	
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	
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	
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	
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	
있다. <u><단서 신설></u>	<u>다만, 어린이의 통행량과</u>
	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평
	일 야간・새벽, 토요일・일요
	일, 「공휴일에 관한 법률」에
	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
	방학 기간에는 어린이 보호구
	역에서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
	통행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
	<u>운영할 수 있다.</u>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	②
구역의 지정·해제 절차 및 <u>기</u>	<u>7]</u>

<u>준 등</u>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	준 등과 제1항 단서에 따른 제
교육부,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	한속도 탄력적 운영
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	
	<u>,</u>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